신산업

03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완화로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간편화

공원 주차장에도 손쉽고 신속하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보급 활성화

추진부서 | 경기도 화성시 산림휴양과, 031-5189-6149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개선배경

-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이용자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생활권 내 충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실제 이용자들은 충전 불편을 자주 겪음
-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도시공원 주차장 역시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규정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
- 이러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 공원 관리 담당자로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고,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제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한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원 내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지자체(관공서)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 면허가 없어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
- 법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설치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구조
-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공원 내 충전시설 설치 · 보급이 사실상 정체되었고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현장의 실행 간 괴리가 발생

추진내용

- 2022. 2. 24. ‘22년 상반기 지자체 정기건의 테마과제 제출
  – 관련법상 공원시설로 정의되지 않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체적인 공원시설 항목으로 명시하여 업무 혼선 개선
- 2022. 5. 11. ‘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결과 ☞ **기시행**
  – 공원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편익시설에 해당
- 2022. 6. 30. ‘22년 하반기 지자체 정기건의 중앙개선 과제 제출
  – 전기차 충전시설을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문화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공원 내 설치하도록 개선 건의
- 2022. 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와의 유선 협의 및 의견
- 2022. 10. 18. ‘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결과 ☞ **수용**
- 2022. 10. 20. 국토교통부 주최 ‘공원녹지법령 제도 개선 관련 회의’ 참석
- 2024. 4.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

추진성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

개선 전	개선 후
도시공원 점용허가로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불가’** → 복잡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수반 必	도시공원 점용허가로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 → 점용허가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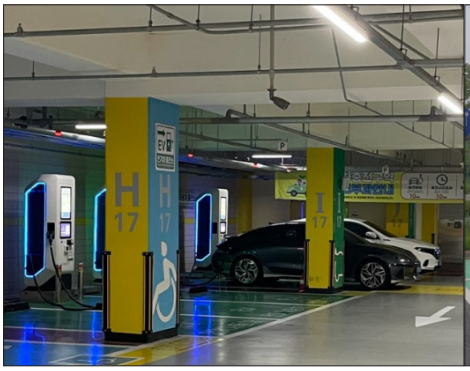
☞ 신구조문대비표(개정사항 반영 부분)

이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7호, 2024. 4. 9. 일부개정]	다음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 · 전선 · 변전소 · 지중변압기 · 개폐기 · 가로등분전반 · 전기통신설비(군용 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1. 전봇대 · 전선 · 변전소 · 지중변압기 · 개폐기 · 가로등분전반 · 전기통신설비(군용 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 수소연료공급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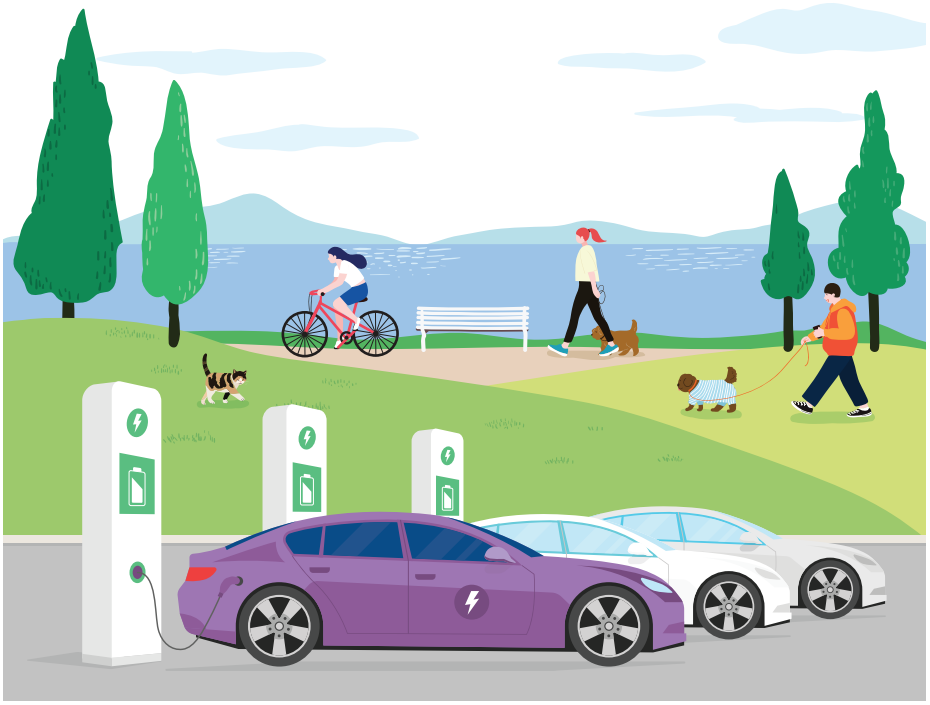
- 도시공원 내 신속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시민 및 공원방문객 이용 편의 제공**
- 민간사업자와 상호 보완적 업무 진행으로 **신산업 민간사업의 사업 활동 기회 확대 및 소득 창출**에 기여
- 환경적 효과 : 기반시설 및 인프라 보급으로 친환경 자동차 사용 증대에 따른 **탄소중립 분야 발전 기여**
- 재정적 효과 :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직접 설치 예산 절감 실현, 점용료 수익으로 시 세외수입 증대

공원 실내 주차장



공원 야외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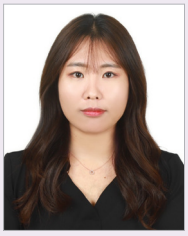


Interview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완화로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간편화

공원 주차장에도 손쉽고 신속하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보급 활성화

경기도 화성시 산림휴양과 권민아 ☎031-5189-6149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 첫 계기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원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업무가 내려왔는데, 정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충전시설을 공원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업무를 접했을 때 솔직히 "아니, 관련 법상 설치도 어려운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법만 개정하면 다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이고, 불평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된 제도 사이에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 또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주차장은 접근성이 좋으니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규제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시설들처럼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민간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도 개선을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손봐야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원 점용허가만으로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는 민간사업자도 공원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가 개선되었다는 행정적 성과보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공원 와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도 간의 괴리를 꾸준히 살피고, 시민의 편익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경험은 규제 혁신이 단순한 법령 개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행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규제 개선을 고민하고 추진하면서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부서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규제 개선이 시민 편익을 높이고 더 나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